

# 2024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

산업발전법 제13조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2, 전기사업법 제 49조, 그 밖에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원자력생태계 복원을 위해 「2024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」의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 
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

## 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해 원자력 분야 사업수행 기업에 인력 및 산업부문 지원
-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(~예산소진시)
  - 공모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

## 2 지원대상

- 공통(참여기업 기준) :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·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

- 지원기준 :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
  - ① 2017. 1. 1.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
  - ② 원자력 발전사업자 또는 주요 관련 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(내역사업별 신청일 기준)
  - ③ 원자력기술 이용 또는 기술 이용 희망기업 (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)
    - 중소·중견·비영리법인 기준

중소기업	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
중견기업	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비영리법인	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

- (매출 기준) 원자력발전사업자,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·설계·정비·연료·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(사무용품, 중계대리점, 청소,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)
- (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기준)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  - \*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,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
  - \* KEPIC, ASME,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
  - \*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,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/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/기관 등

- 지원대상 중 경력인력, 학생 자격 등은 상세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고

### 3 지원규모

- 정부지원금 : 총 11,208백만원

	상세 사업명	사업비
1	퇴직자·재직자 역량강화 지원	3,210백만원
2	전공자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 지원	1,668백만원
3	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	5,330백만원
4	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	1,000백만원
	총 계	11,208백만원

### 4 신청방법

- 사업별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개별 신청

### 5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'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([pms.nisp.kr](http://pms.nisp.kr))'을 통해 사업 신청, 평가, 협약 등 사업수행의 전 과정을 관리함
-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의 등록,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, 사업비 정산 등의 과정을 '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(나라도움 : 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'을 통해 관리함
  - \* 참여기업은 협약 이후 '나라도움'에 사업을 등록하고 사업계획서, 예산집행 계획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- 참여기업은 본 사업에 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함
- 신청 시 사업별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, 공고문에 명시한 관리지침(또는 가이드북)과 「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

계획서를 작성해야 함

-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참여기업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·장비, 시작품, 지식재산권 등의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나, 부득이한 경우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- 주관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,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참여기업은 수혜실적 및 성과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조사, 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,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 참여기업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·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, 귀책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
## 6 사업 설명 및 안내

- 사업의 상세 사업내용과 안내자료는 홈페이지([nisp.kr](http://nisp.kr))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

## 7 세부사업별 지원내용

※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와 문의처(문서 제일 뒤쪽)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(1) 퇴직자·재직자 역량강화 지원

### □ 사업내용

- (역량강화 교육 지원) 원전분야 및 원전분야 신규진입 희망(他산업 경력 보유) 퇴직자·재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무상 제공
- (인건비 지원) 원전분야 및 타산업 경력 보유한 경력인력과 원자력 중소·중견기업, 비영리법인 구인구직 매칭 및 인건비 지원

### □ 지원내용

지원대상	지원내용
경력인력	역량강화 교육 무상 제공 및 재취업 희망기업 매칭 지원 - 교육 분야 : 원자력 이해(기초), 방사선, 프로젝트관리, ISO(19443), 건설 기본, 용접·재료, 품질안전, 정보통신, 해외 건설사업, 원전해체, 핵융합, SMR 등
참여기업	경력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360만 원 인건비 지원 (급여 90%(최대 400만원), 최대 6회, 기업당 연간 최대 5명)

### □ 지원대상

- 경력인력 : 아래 1) 또는 2) 충족 시 지원 가능
  - 1) 2017. 1. 1. 이후 원자력분야 매출 보유기업, 원자력발전사업자,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 등록 중소·중견기업, 원자력 분야 기술이용기업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2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
  - 2) 他산업군에서 2년 이상 재직 후 원전분야 기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전문인력 (재직자) 또는 2년 이상 재직 후 2017. 1. 1. 이후 퇴직한 자
- 참여기업 : 동 공고 1페이지 '공통(참여기업 기준) 참조

### □ 지원절차

- 경력인력 및 참여기업 등록, 역량강화 교육 신청, 매칭시스템 이용, 지원사업 신청은 지원사업 홈페이지(nisp.kr)에서 가능함

- 협약체결 대상 경력인력은 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수료해야 함
- 인건비 지원은 참여기업에서 월급여 선 집행 이후 지급서류 검토를 통하여 지원함

모집구분	지원내용
역량강화 교육 지원	경력인력 등록 → 적격성 평가 → 역량강화 교육 신청 및 수료 (수료 조건 : 출석률 80% 이상, 종강시험 70점 이상)
인건비 지원	경력인력, 참여기업 등록 → 적격성 평가 → 경력인력-참여기업 매칭 (매칭시스템) → 자체 채용 완료 → 지원사업 신청 → 심의조정평가 → 협약체결 → 채용보조금 지급 및 사업관리 (월별)

## (2) 전공자 인턴십 · 정규직 전환 지원

### □ 사업내용

- (인건비 지원) 원자력 전공자와 원자력 중소·중견기업, 비영리법인 인턴 선발 매칭 및 인건비 지원
- (현장실무 연수프로그램 지원) 원전기업에 원자력 및 유관 전공자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
### □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			
원자력 전공 인턴 인건비 지원	□ 체험형 인턴 채용보조금 (4개월) 지원			
	구분	기준급여	국고보조금 (최대 80%)	민간부담금 (최소 20%)
	학사	210만 원 이상	168만 원	42만 원 이상
	석사	250만 원 이상	200만 원	50만 원 이상
	박사	350만 원 이상	280만 원	70만 원 이상
	□ 정규직 전환 채용보조금 (6개월) 지원			
	구분	급여수준	국고보조금 (최대 60%)	민간부담금 (최소 40%)
	학사	210만 원 이상	126만 원	84만 원 이상
	석사	250만 원 이상	150만 원	100만 원 이상
	박사	350만 원 이상	210만 원	140만 원 이상
전공자 현장실무 연수프로그램	원자력/방사선, 원자력 유관 전공자를 대상 기업 현장실무 교육프로그램 (원전 주요현장 견학, 취업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, 현장실습 등) 기획 및 운영 * 동 프로그램은 원산협회에서 주도하여 운영(회차당 4,000만 원 내외 교육비(강사료, 임차료, 교육생 숙박, 식비 등 교육운영 제반비용) 활용 운영)			

### □ 지원대상

- 참여기업 : 동 공고 1페이지 '공통(참여기업 기준) 참조
- 전공자 : 원자력 및 방사선 전공자 또는 원자력 유관 전공 (기계, 전기 물리 등 이공계) 학사 이하, 석사, 박사 학위자

- (공통) 만17세 이상~만34세 이하 또는 최종 학위 졸업 3년 이내인 대한민국 국적자
- (고졸)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 졸업(예정)자
  - 원자력 유관 전공 : 기계, 전기전자, 화학, 물리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
- (전문학사 및 학사)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
  - 원자력전공자 : 원자력 전공필수과목<sup>1)</sup>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
  - 원자력 유관 전공자 : 기계, 전기전자, 화학, 물리, 환경공학, 방사선, 건축, 토목,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(이공계)
- (석사)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
  -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(포스터, 학회논문 등 포함)의 연구원(조사원) 등으로 기재된 재학생, 휴학생 및 기졸업자
  - 학사학위 전공 무관
  - 원자력 유관 전공자 : 기계, 전기전자, 화학, 물리, 환경공학, 방사선, 건축, 토목,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(이공계)
- (박사)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
  -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(포스터, 학회논문 등 포함) 등을 보유한 재학생, 휴학생, 기졸업자
  - 학/석사학위 전공 무관
  - 원자력 유관 전공자 : 기계, 전기전자, 화학, 물리, 환경공학, 방사선, 건축, 토목,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(이공계)

※ 현장실무 연수프로그램 전공자 모집 기준도 위와 동일

## □ 지원절차

- 전공자 및 참여기업 등록, 매칭시스템 이용, 지원사업 신청은 지원사업 홈페이지(nisp.kr)에서 가능함
- 인건비 지원은 참여기업에서 월급여 선 집행 이후 지급서류 검토를 통하여 지원함

모집구분	지원내용
인건비 지원	전공자, 참여기업 등록 → 적격성 평가 → 전공자-참여기업 매칭 (매칭시스템) → 자체 채용 완료 → 지원사업 신청 → 심의조정평가 → 협약체결 → 채용보조금 지급 및 사업관리 (월별)
현장실무 프로그램 지원	현장실무 연수프로그램 기획 (협회) → 행사 운영사 모집 → 프로그램 공고 및 참여 학생 모집 → 참가자 확정 및 시행 → 소요비용 정산

1)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: 핵공학개론(원자력공학개론), 방사선공학, 원자로이론, 원자로안전공학, 원자로시스템공학, (방사선)보건물리, 원자력법령및안전규제, 핵주기공학개론, 열역학및원자력시스템, 원자로동역학및제어 등 주관기관 인정 과목

### (3)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

#### □ 사업내용

- (기술개발비용 지원) 기업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, 사업화, 시장진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기술개선 요소 지원
- (경영운영비용 지원) 원전분야 기업의 기술이외 경영개선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(긴급 경영운영비용 지원) 긴급 기기정비, 필수자격취득 등 기업에서 긴급하게 원전사업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비용 지원

#### □ 지원내용

구 분	지 원 내 용		
재도약 지원	□ 기업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, 사업화, 시장진출에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기술개선 요소 지원		
	구 분	내 용	지 원 금 액
	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	시장진출 시제품의 설계, 제작, 공정 처리 지원	5,000만 이내
	인증취득	국내외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, 시험, 공인검사, 목업제작 등	5,000만 이내
	지식재산권	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·분석 등	1,000만 이내
	기술도입·보호	국내외 기술도입, 기술보호 (보안, 유출방지)	2,000만 이내
	장비활용	국가연구시설 및 일반기업 연구장비 활용	1,000만 이내
	검교정 및 장비수리	시험장비 교정지원 및 보유장비 수리 등 품질개선 지원	2,000만 이내
	교육비	필수 이수 교육비용 지원	500만 이내
	안전관련 지원	안전관련 장비검사 및 교정, 안전장비, 외부교육, 정비비용 등 ※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안전 관련 지원	1,000만 이내
기타	기타 재도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	2,000만 이내	
<b>기업당 최대 지원금액</b>		<b>정부지원금 비중</b>	<b>기업부담금 비중</b>
건별 합산하여 1억 원 이내		80%	20%
※ 지원금액은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기업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참여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 해야하는 금액임.			

경영안정화 지원	□ 원전분야 기업의 기술이외 경영개선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지원		
	<b>구분</b>	<b>내용</b>	<b>비고</b>
	시장조사	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	2,000만 이내
	디자인 개선	신규·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	1,000만 이내
	BI·CI개발	BI(Brand Identity)·CI(Corporate Identity) 개발 지원	500만 이내
	홍보	기업·제품·기술 홍보를 위한 리플릿, 동영상, 홈페이지 등 제작	1,000만 이내
	전시회	부스 임차·설치, 비품 임차, 참가비, 장치 설치비 등	1,000만 이내
	기술모형 제작	전시 비치를 위한 핵심 상품의 모형제작 등	1,000만 이내
	기타	기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	1,000만 이내
		<b>기업당 최대 지원금액</b>	<b>정부지원금 비중</b>
	건별 합산하여 3,000만 원 이내	80%	20%
	※ 지원금액은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기업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참여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임.		
회복 지원	□ 탈원전 정책 기간 중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전사업 유지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긴급 기기 정비, 필수 자격 취득, 입찰 참여를 위한 교육 비용 등 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 지원		
	* 재도약, 경영안정화는 원전 매출 및 기술이용 등을 입증하면 요건이 되지만 회복지원은 '17년~'23년간 기업 매출 감소 증빙자료 추가 제출 필요 - 원전매출 '17년 대비 6개년('18년~'23년)간 연속된 2개년을 택하여 매출이 평균 10%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		
	<b>기업당 지원금액</b>	<b>정부지원금 비중</b>	<b>기업부담금 비중</b>
	1,250만 원	80%	20%

□ 지원대상 : 동 공고 1페이지 '공통(참여기업 기준)' 참조

※ 원전 중소·중견기업 (우선) 원전분야 기술 활용 및 진출기업 (차순위)

□ 지원절차 : 사업공고 → 기업 신청/접수 → 평가 및 참여기업 선정 → 협약체결 → 1차 사업비 지급 → 사업수행 → 중간 점검(사업별 상이) → 2차 사업비 지급 → 참여기업 결과 보고 → 사업종료

□ 신청방법 :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(tech@kaif.or.kr)

#### (4)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

사업내용

- (SMR 기술개발 비용 지원) 원전 중소·중견기업의 SMR 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화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관련 사업 지원

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		
	총 지원금	정부지원금	기업부담금
기자재 성능시험·인증비용 기술 분석·검증 비용 시설·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	6,250만원 (100%)	5,000만원 (80%)	1,250만원 (20%)
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 On-Demand 지원			
SMR 해외시장개척 지원	1,875만원 (100%)	1,500만원 (80%)	375만원 (20%)

지원대상 : 동 공고 1페이지 '공통(참여기업 기준)' 참조

※ 원전 중소·중견기업 (우선) 원전분야 기술 활용 및 진출기업 (차순위)

지원절차 : 사업공고 → 지원서 작성 → 평가 및 참여기업 선정 → 협약체결 → 사업비 교부 → 사업수행 → 진도점검 → 정산 및 결과보고

신청방법 : NUSYS(pms.nisp.kr)을 통한 사업신청

## 8 사업별 문의처

- (공통) 원전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: [www.nisp.kr](http://www.nisp.kr)
- (공통)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홈페이지 : [www.kaif.or.kr](http://www.kaif.or.kr)
- 퇴직자·재직자 역량강화 지원
  - 02-6953-2514, 02-6953-2548
  - (재취업) [job@kaif.or.kr](mailto:job@kaif.or.kr) (교육) [career@kaif.or.kr](mailto:career@kaif.or.kr)
- 전공자 인턴십·정규직 전환 지원
  - 02-6953-2514, 02-6953-2526 / [intern@kaif.or.kr](mailto:intern@kaif.or.kr)
-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
  - 02-6257-2596, 02-6257-2545 / [tech@kaif.or.kr](mailto:tech@kaif.or.kr)
-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
  - 02-6257-2596, 02-6257-2545 / [smr@kaif.or.kr](mailto:smr@kaif.or.kr)